# 제6장 휴학·복학과 퇴학·제적

## 제1절 휴학과 복학

**제23조(휴학)** ①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해당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.(개정 2007. 3. 1., 2026. 2. 1.)

1. 가사휴학: 개인 사정에 따른 휴학
2. 군입대 휴학: 군입대에 따른 휴학
3. 질병휴학: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또는 질병에 따른 휴학
4. 창업휴학: 창업에 따른 휴학
5. 육아휴학: 임신과 출산, 육아로 인한 휴학
6. 기타휴학: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등

② 우리 대학교의 교의 또는 지정의사가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에 대하여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.

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24조(휴학기간)** ① 가사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26. 2. 1.)

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통산 6학기 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학기간은 1년(창업휴학은 최대 2년) 또는 연수원 교육기간을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(신설 2013. 6. 14., 2013. 12. 30., 2014. 4. 25., 2026. 2. 1.)

1. 질병휴학
2. 육아휴학
3. 창업휴학
4. 기타휴학

**제25조(복학)**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